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2021. 8. 3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62호로 2021년 7월 13일 최봉희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발굴하여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 도모를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공개대상(안 제1조 ~ 제2조)

나. 공개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안 제4조)

라. 예산낭비 심사 및 성과금 등 지급 및 포창 규정(안 제5조 ~ 제6조)

마. 예산바로쓰기 구민감시단의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 제11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 다. 입법예고(2021. 8. 20. ~ 8. 24.)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포상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동기를 부여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총 12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됨.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고 예산절감 사례, 예산낭비 신고 조치결과,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제안사례 등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을 매년 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음.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운영과 예산낭비 등의 심사에 관하여 정하며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감사, 제안 등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였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른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도 2012년부터 운영해왔음.

- 안 제6조는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에 관한 규정으로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성과금 지급과 함께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예산 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예산낭비신고, 현장조사 및 제도 개선 제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감시단을 30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였음.

행정안전부에서는 2015년부터 “예산 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게 하였으나, 주민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1.1.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54조의2제6항에 조례로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한 바 상위법령에 따른 타당한 규정임.

다만 제7조제3항에 감시단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유사기능의 위원회 중복을 방지하였음.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현황〉

기구명	구성원	위원회 기능
영등포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30명 (민간인 3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주민제안사업 의제발굴 및 검토 -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 제시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절감 또는 낭비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내용으로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예산 바로쓰기 구민감시단 운영 등으로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구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절감 제안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및 포상 제도 운영으로 실질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를 기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재정법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54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다.